

총리령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법 제3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제공(교사 또는 방조를 포함한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영업소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소의 정보(영업소 명칭, 대표자명, 업종, 소재지 및 허가·등록·신고번호 등)와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3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법</u> <u>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사기</u> <u>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u> <u>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u> <u>가 법 제3조제11호에 해당하는</u> <u>것을 알면서 장소·시설·장비·</u> <u>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제공(교</u> <u>사 또는 방조를 포함한다)한 것</u> <u>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영업소</u> <u>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u> <u>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u> <u>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소의</u> <u>정보(영업소 명칭, 대표자명, 업</u> <u>종, 소재지 및 허가·등록·신고</u> <u>번호 등)와 위반사항을 통보하</u> <u>여야 한다.</u>